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32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뉘시통제구역 지정 시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 근거 마련	4
2. 뉘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횟수 제한 폐지 등	9
3. 뉘시어선 어획실적 신고 근거 마련	13
4. 뉘시여가특별구역 지정 근거 마련 등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27.

3. 회 부 일 : 2024. 8. 28.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은 국민의 수변 접근권 및 이용권을 심각하게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있어서도 지정 대상 수면의 이용 현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민주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용 수면의 경우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 내외로 제한되어, 공공용 수면은 공공용이 아닌 수면과 비교하여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이

그 절반이므로 사업의 영속성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자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낚시가 대표적인 레저활동으로 성장하여 낚시 인구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낚시통제구역 지정 확대 등으로 인하여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낚시 인구의 증가는 수산자원의 남획, 환경 오염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로 인한 낚시인과 인근 주민 및 어업인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낚시통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낚시터업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등 낚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낚시와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특례와 지원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을 조성하고 낚시가 국민의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자리잡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안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되, 낚시인의

안전 확보 등 긴급히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낚시통제구역을 우선 지정하고 사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수면의 이용 현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라.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최초 허가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0년으로 함(안 제12조제2항).

마.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 영업에 따른 어종별 어획량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변경·지정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4조의2 신설).

사.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하여 수산동물 포획·채취 등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IV. 검토의견

1.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낚시통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및 낚시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이용현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생략)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	④ ----- -제3항----- ----- -----

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 설>

<신 설>

[illegible]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조의2(주민 등의 의견수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¹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시인 등의 안전 확보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 긴급히 납시통제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납시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실태조사) ① 시장·군수

·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수면의 이용 현황 및 낚시인 안

	<u>전사고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낚시행위 및 낚시터업 영업 등이 금지되어 낚시를 하려는 자 또는 낚시터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 등의 수면 접근권 및 이용권 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현행법에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수면 이용 현황 등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근거가 미흡하고 절차의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개정안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경우 일정 기간마다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수렴 및

1)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 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와 관련, 안 제6조제2항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낙시통제구역 지정의 적절성여부를 검토·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6조제4항²⁾에서 낙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낙시통제구역 지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여부도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음으로, 낙시통제구역 지정 시 주민이나 낙시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행정행위를 하기에 앞서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의견수렴의 대상인 지역주민 및 낙시관련 단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칫 의견수렴의 대상자가 넓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하위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하거나, 낙시통제구역 지정으로 인해 생계나 여가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2) 제6조(낙시통제구역) ④ 제1항에 따른 낙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아울러 현재 지자체 조례 중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내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례³⁾가 있는 점도 참고할 수 있겠음.

3)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收斂)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2.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횟수 제한 폐지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최대 30년으로 하며,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 영업에 따른 어종별 어획량 등을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개정, 제27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① (생략)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한 낚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낚시터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회 10년 이내에서 <u>2회까지 그 기간</u> 을 연장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② ----- ----- ----- ----- ----- ----- <u>그 기간</u> ----- ----- <u>.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을 넘지 못한다.</u>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⁴⁾은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시장·군수·

4)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한 낚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낚시터업

구청장은 낚시터업자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회 10년 이내에서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합친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최대 30년임.

- 한편, 현행법상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면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있는데, 현재 「하천법」⁵⁾상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과 「농어촌정비법」⁶⁾상 농업생산기반시설·용수의 목적 외 사용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하천이나 농업시설”에서 낚시터업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 및 연장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회 10년 이내에서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점용, 하천시설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하천법 시행규칙[별표5]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점 용 의 유 형	점 용 기 간
1. 토지의 점용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3. ~ 9. (생략)	

- 6)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가. 진·출입로,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 가로등·전주 및 철도·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하천법」이나 「농어촌정비법」상의 기간(5년)과 일관되게 적용⁷⁾함에 따라, 하천이나 농업시설에서 낚시업을 하는 경우는 낚시법에 따른 유효기간을 2회 연장하는 경우 총 허가의 유효기간이 최대 15년에 그치게 됨.

[법령 적용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비교]

구 분	낚시법상 유효기간 적용시	하천법상 유효기간 적용시
최초 유효기간	10년	5년
1회 연장	+10년(누적 20년)	+5년(누적 10년)
2회 연장	+10년(누적 30년)	+5년(누적 15년)

이에 개정안은 낚시법 상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최대 30년(최초 유효기간+연장기간)의 범위로 허가기간을 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해당 기간내에서는 횟수의 제한없이 낚시터업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당초 제12조에서 유효기간의 연장 횟수를 2회로 두고 있는 점은 무분별한 허가 연장을 최소화하여 낚시터업의 장기적인 운영을

7) 현행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은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사용승인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허가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 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9조(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물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낚시 대상 수산동물의 산란·성육(成育) 등 번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사용승인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도모하려는 취지인 측면이 있는데, 유효기간 연장의 횟수 제한을 삭제할 경우의 낚시터업자가 불필요하게 여러차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도 예상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또한 개정안의 규정이 필요한 경우는 공공용 수면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적용상의 사안이므로, 개정에 앞서 공공용 수면을 이용하는 낚시터업과 아닌 경우의 현황 등을 보다 조사하여 그 개정의 필요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하천법」 및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되는 장소의 경우 해당 법에 따라 5년의 허가 기간이 준수되도록 하고, 대신 개정안과 같이 낚시터업 허가 연장횟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공공용 수면을 이용하는 낚시터업과 다른 수면을 이용하는 낚시터업이 모두 동일한 최대 유효기간을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낚시어선 어획실적 신고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안 제27조의2는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어선의 명칭이나 어선업자의 성명, 어종별 어획량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7조의2(어획실적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획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의 명칭 및 어선번호 2.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및 주소 3. 영업일시 및 장소 4. 어종별 어획량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어획실적의 신고 시기·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낚시는 현재 수변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레저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낚시로 인한 자원남획, 환경오염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낚시인과 지역 주민, 어업인 간의 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개정안은 어획실적 보고를 통해 낚시어업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낚시어업의 확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낚시인 및 어업인 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반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낚시어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 제도(TAC)의 도입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관련 기관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 낚시 어선의 어획실적 보고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하되, 어획량 통계 분석(승객 1인당 어획량 등)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개정안에 따른 신고 대상인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및 주소’ 대신 ‘낚시어선 승객 수’를 신고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음으로, **수협중앙회**는 낚시어선업자에게 어획실적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모든 어선에 대해 총허용어획량 제도(TAC)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연근해어업 선진화 추진방안과 상통하고,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정책이 실효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획실적보고와 함께 낚시로 잡는 수산자원에 대해서도 TAC를 도입해 어획량을 제한하고 자원남획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4조의2(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

<신 설>

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여가특별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낚시여가특별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 신청의 방법·절차 및 지정의 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4조의2에 따라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낚시여가특별구역 내의 낚시 도구·시기·대상 및 수산

	<u>동물의 포획·채취 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5조(과태료) ① ----- ----- ----- -.
1. ~ 22. (생략)	1. ~ 22. (현행과 같음)
23.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한 자	23. 제47조제6항----- ----- -----
24.·25. (생략)	24.·2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권자, 지정 대상 및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환경을 조성하여 증가하는 낚시수요에 대응하고, 낚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이나 기존 어업인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낚시는 어업인과 동일한 수산자원을 대상으로 어획을 한다는 측면에서 낚시 수요의 확대는 어업인과의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도 기존 어업구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있는바, 낚시통제구역과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은 정책적으로 연계하여 검토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 주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임.

□ 관련 기관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와 국가유산청은 낚시환경 조성 및 낚시로 인한 사회갈등 최소화를 위한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나,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문화유산법」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음으로, 수협중앙회는 낚시여가특별구역의 도입은 어업인 조업구역과 겹칠 수밖에 없어 낚시인과 어업인 간 조업경쟁으로 인한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고, 낚시여가특별구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평성을 고려해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에 앞서 해당 지역과 상응하는 낚시통제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2